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참여위원회 임기 변경 (안 제26조)

- 아동참여위원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

나. 아동권리옹호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36조)

-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임기, 활동지원,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및 조사, 구제 등 기능에 관한 규정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국제조약 : 「아동복지법」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26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5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 ①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 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2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아동위원의 임기) ----- ----- <u>2년</u> ----- -----.
제35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 ⑥ (생략) ⑦ <u>시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구제, 고충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u> ⑧ (생략) <u>제6장 보칙</u>	제35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 ⑥ (현행과 같음) <u><삭제></u> ⑧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36조 (생략)</u> <u><신설></u>	<u>제36조(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운영)</u> ①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5명 이내

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

<u><신 설></u>	<u>동친화와 관련된 사항</u> <u>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u> <u>동권리옹호관에게 수당을 지급</u> <u>할 수 있다.</u> <u>제6장 보칙</u> <u>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u>
---------------------------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아동권리옹호관 관련 조항 신설(안 제3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작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우며,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선언적 내용이 포함,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아동권리옹호관 활동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안)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수 당	아동권리 옹호관	회의 : 100천원×5명×2회 여비 : 20천원/1회당×5명	1,100천 원

- 수당 산출근거
 - 회의 : 인당 70,000원(기본) + 30,000원(초과)
 - 활동 여비 : 1회당 20,000원
- ※ 2019년 예산편성지침 기준(위원회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기준)

4. 작성자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담당 허광호(054-480-6564)

소관 실·과		아동보육과
입 안 자	과 장	황 은 채
	담 당	홍 경 화
	담 당 자	허 광 호 (480-6564)